

국내 초상권 관련 판결 경향에 관한 고찰

차형근

차형근법률사무소 변호사

I. 들어가며

대법원 판례는 초상권을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로서 헌법 제 10조 제1문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라고 한다.¹⁾ 이러한 초상권은 인격권의 하나로서 1980년대 후반부터 하급심판례에 의하여 인정받아 오다가 2005년 1월 27일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1항이 “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 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두면서 인격권의 하나로서 명문화되기에 이르렀다. 특정 인격을 인식하는데 있어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란 말이 있듯이 시각적 방법은 다른 인식방법에 비하여 우월성을 가지고 있

는데다가 매스미디어를 비롯한 정보통신망의 확대 및 피사체를 촬영하는 기술의 발달은 언제, 어디에서 자신의 초상이 작성, 공표될지 모른다는 문제를 일상화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들어 지하철 내에서의 노인과 의 다툼, 애완견을 둘러싼 싸움이나 식당에서 임산부를 둘러싼 폭행 문제 등에서 특정 인격의 초상은 아무런 여과 없이 인터넷 등에 노출되었고 두고두고 재생될 수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특정인의 초상이 촬영, 공표되어도 되고, 어떤 경우에 초상의 촬영·공표가 불법행위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초상권이라는 인격권과 알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였을 때 주로 일어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앞서 본 대법원 판례는 “이처럼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1)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이하 ‘침해법익’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각각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초상을 촬영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경우를 가르겠다는 입장으로 구체적 타당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 초상의 촬영이나 배포가 허용되는지를 미리 가르쳐주지 않는 관계로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법이나 학설은 초상에 대한 촬영이나 배포가 허용되는 경우를 거시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경우가 당사자의 동의이다.²⁾

2005년도에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2009년 개정 시에도 제5조 제2항이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의 동의’는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되어 왔었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의 동의’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 형법상 피해자가 처분할 수 있는 법익에는 오로지 법익주체의 자발적 처분권에만 맡겨져 있는 법익과 당해 법익주체의 자율적 처분권과 함께 사회적인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법익으로 나누는 것이 다수설이고 전자의 경우에는 구성요건 해당이 없기에 양해라고도 부르며 후자의 경우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그 법익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되어 그러한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여지만 있을 뿐 여전히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되고 그러한 법익침해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해자의 승낙만 있어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사회 윤리적으로 용인되어야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말아야 한다는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도 피해자의 승낙을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경우와 구성요건을 조각시키는 경우로 나누고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그 승낙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것임을 요건으로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³⁾

위와 같은 형법상의 설명을 원용하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동의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의미하며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언제 어디에서 어떤 범위까지 공개되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인격권의 속성에서 연유되는 권원이다.

피해자의 동의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란 민법상의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등의 경우이다. 즉 ①의 사무능력자의 동의, ②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2) 예컨대 독일 미술저작권법은 제22조에서 초상의 배포, 전시는 초상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초상본인이 촬영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제23조는 제22조의 예외로서(현 대사의 영역으로부터 나온 초상, ㉠ 경이 나 기타 장소에서 초상 본인이 부수적으로 나타나 있는 장면, ㉡ 상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집회, 행렬 기타 유사한 사건의 장면, ㉢ 문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초상으로서 그 배포나 전시가 고도의 예술적 이익에 이바지 하는 초상을 거론하고 있고 제24조는 사법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경우도 예외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3) 김성돈, 형법총론 2판, skkup 293~308면 참조

위반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는 동의, ③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내용을 조건으로 하는 동의, ④피해자의 동의가 선의가 아니고 이를 가해자가 인식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동의, ⑤동의 조건의 중요 부분에 악의나 착오가 있는 동의, ⑥사기나 강박에 의한 동의 등이다.

동의에 의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었는가 여부는 행위의 목적이나 수단의 상당성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며 동의자의 동기만을 고려하여 사회상규 위배여부를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초상권침해의 문제에서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동의의 문제를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II. 판례에 나타난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동의⁴⁾

1. 동의의 주체

(1) 동의를 할 수 있는 동의의 주체를 밝히기 위하여는 먼저 동의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살펴 보아야 한다.⁵⁾ 초상권이 자신의 초상에 관한 자유로운 자기 결정으로서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고도의 개인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강조하면 동의는 자기 초상의 촬영 또는 공개행위에 대한 단순한 허락이어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설(사실행위설)이 있다. 이 설은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초상사용에 동의하여야 하고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에 비하여 초상을 민법총칙상의 법률행위적 의사표시로 보아 행위능력이 필요하다는 설(법률행위설)

이 있다. 이는 초상의 사용이 일상적인 법적거래의 대상으로 되고 있고 실제로 그 동의는 허용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경우 상당한 대가를 예정하고 계약이 행하여지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설에 따르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초상권의 이용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최근에는 행위능력이 없더라도 법익침해의 의미와 정도를 인식하고 찬성과 거부를 비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 따라 자기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연적 능력을 기본권 능력으로 보고 이러한 기본권 능력이 있으면 족하다는 설이 유력하다.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도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민법이 정한 미성년자의 나이보다 적은 나이를 법정대리인이 관여할 수 있는 기준나이로 삼고 있다. 이른바 아이돌스타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초상권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동의는 피촬영자 본인이 하여야 한다. 인격권의 속성 중 하나가 자기결정권이다. 초상권도 인격권의 하나이므로 초상을 언제, 어디에서 어떤 범위로 공개할 것이냐는 해당 인격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화여론조사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의 초상을 피촬영자의 직접 동의를 받지 않고 직장상사의 동의만을 받은 경우에는 동의 없이 초상을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판례 [127] 참조).

(3) 피촬영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초상의 작성·공표에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음이 원칙이다.⁶⁾ 그러나 피촬영자가 사인인 경우인데도 동의 없이도 촬영·공표

4) 본문에서 언급된 판례 []는 논문 뒤의 〈판례〉 리스트를 참조할 것

5) 박용상, 명예훼손법, 현암사, 408면, 536면 각 참조

6) 판례 [6], [11], [13], [14], [22], [24], [28], [29], [33], [36], [40], [43], [50], [52], [53], [55], [56], [64], [66], [83], [89], [92], [94], [96], [99], [107], [108], [118], [119], [120], [122], [131], [133], [134], [135], [136], [137], [141] 참조

7) 판례 [37], [58], [65], [68], [84], [101], [111], [115], [127], [129], [130], [132], [138] 참조

가 가능하다고 본 경우가 있다.⁷⁾

- ① 판례 [58], [84], [115] : 모자이크 처리 등으로 피해자로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다.
- ② 판례 [37], [68] :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로 이익형량의 결과 동의 없이 초상권 사용이 허가된 경우이다.
- ③ 판례 [66], [94] : [68]의 1심과 3심의 판결인데 [68]의 경우와 달리 이익형량의 결과 동의 없는 사진 촬영을 위법한 경우로 보았다.⁸⁾
- ④ 판례 [65], [101], [111], [127], [129] : 모두 보도를 위하여 초상을 사용한 경우인데 보도내용과의 관련성이 있고 초상권자의 초상에 중점이 있었던 경우는 아니다. 이는 독일 미술저작권법 제23조 제2항의 '풍경이나 기타 장소에서 초상 본인이 부수적으로 나타나 있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경우이다.
- ⑤ 판례 [130], [132], [138] :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에 참여한 경우이다.

(4) 피촬영자가 공인인 경우에는 인격적 측면으로서의 초상권 사용에는 동의를 요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초상권의 재산권적 측면을 부각시킨 경우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의 경우에는 피촬영자인 연예인 등이 공인이라 하여도 본인들의 초상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⁹⁾ 초상권의 인격권적 측면을 이용할 경우는 공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명예훼손의 사실과 함께 게재하는 것을 금하는 등 그 사용에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판례 [1]은 초상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국내에서 최초로 초상권이 문제가 된 사례이다. 울산그룹의 대표인 신청인의 초상만이 사용되었으면 유명한 재벌기업의 총수

로서 공인이었기 때문에 판례 [17]과 같이 가치분이 각되었을 것이나 공인이라 볼 수 없는 신청인의 처 및 다른 임원들의 초상이 함께 사용되었기에 가치분이 인용된 사례이다. 판례 [14]에서도 재벌의 처에 대하여는 공인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판례 [5]는 유명연예인이 당시 권력자이었던 전○○씨와 연애설이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보도이전에 유·무료로 배포하였던 사진영상집의 피해자 초상을 사용한 경우이다. 다른 경우에 사용되었다면 유명연예인이 공인인데다 영상집이 홍보용으로 배포된 점을 고려하여 동의를 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기사내용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명예훼손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공인의 초상이라 하여도 그 사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판례 [9]는 사건 당시 노○○, 최○○ 등 특정 연예인을 빗대어 유머가 생성되고 책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을 때의 사례이다. 사건 당사자인 노○○은 예명이 아닌 본명일뿐더러 결혼을 하지 않은 처지였는데 유머집의 내용에는 당사자의 신체와 관련된 명예훼손적인 부분도 있었기에 판매금지가처분이 인용되었다. 판례 [16]에서도 가족사진 중에서 가족들의 사진부분에 대하여는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었다. 공인의 가족이라 하여 공인이 되지 않음을 확인한 사례이다. 판례 [17]은 김○○의 평전에서 사진을 사용한 경우인데 유명기업의 총수로서 공인이므로 초상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판례 [35]는 유명야구선수 박○○ 평전의 경우로 판례 [17]과 동일하다.

판례 [18]과 [20]은 통일운동가 임○○의 결혼식 장면을 호화웨딩드레스와 관련된 보도에 삽입하여 방영한 경우인데 결혼식에 사진기자들이 참석하여 촬영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것은 결혼식 장면을 공표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라 할 수 있지만 호화웨

8) 한위수, 신체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의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를 미행하면서 사진을 촬영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미국의 법리와 판례, 판례실무연구9 (사법발전재단), 229~248면. 엄동섭, 증거모집을 위한 사진촬영과 초상권 - 독일과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판례실무연구9 (사법발전재단), 249~277면.

9) 판례 [3], [4], [7], [12], [16], [21], [23], [25], [26], [27], [30], [39], [46], [48], [59], [61], [69], [70], [72], [75], [76], [77], [81], [100], [102], [103], [104], [109], [112], [113], [114] 참조

딩드레스라는 보도에 삽입하여 방영했다면 피촬영자인 임○○이 호화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하였다는 추측을 하게 되어 피촬영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므로 문제가 있다. 결국 고등법원판결이 타당한 결론으로 보인다.

판례 [21]은 모델만화가 문제된 사안인데 만화의 내용이 모델의 명예를 훼손한 바가 없다고 보아 초상권 침해를 부인한 사안이다. 판례 [22]는 윤○○씨의 막내동생을 딸로서 추측케 하는 기사에 윤○○씨의 초상을 사용한 경우이다. 예전에 배우였다고 하여도 오랜기간동안 주부로서 사람들의 관심사 밖에 있었으므로 공인을 부인한 경우이다. 판례 [31]은 정치가인 김대중의 사진을 김일성 및 김정일의 사진과 나란히 게재하여 김대중이 공산당원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경우로서 공인의 초상권사용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이다.

판례 [51]은 지하철에서 성추행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하였으나 피촬영자의 초상을 그대로 방영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경우이다. 범죄보도에 있어서 누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아닌 한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피촬영자가 초상 그대로의 방영에 동의하지 않았으리라고 본 사례이다.

판례 [54], [57]은 유명기자인 조○○의 초상을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 포함된 기사와 함께 게재한 경우로서 공인의 초상권 사용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이다. 판례 [56]은 판례 [1], [141]과 유사한 경우로 유명 연예인의 약혼자라고 하여 공인으로 볼 수 없고 대학 졸업 앨범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것이 위법이라고 본 경우이다.

판례 [63]은 유명정치인 권○○씨와 관련된 사안으로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 사진기사는 2002년 3월 5일 아침경부터 원고의 사진을 찍기 위하여 원고가 살고 있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아파트의 출입구에서 대기하였으나, 원고가 나오지 아니하고 또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5층의 정면이 커튼으로 내부를 가리고 있어 촬영이 용이하지 아

니하자, 같은 날 18:30경 위 아파트 뒷면에 마주하고 있는 아파트동 5층 계단에 올라가 마침 원고가 아파트의 거실 식탁에서 그의 측근인 소외 조○○, 강○○, 김○○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장면을 망원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고들은 최고위원 경선 당시 원고의 정치자금지원 논란에 대하여 취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2002. 3. 6.자 조선일보 제1면 톱기사로서 “권○○씨 정치자금 살포 돈반은 후보-출처 밝혀야”라는 큰 제목과 “게이트마다 배후 인물로 지목”이라는 소제목 하에 위 김○○의 선거자금 고백의 파문이 여야의 정치자금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고, 바로 그 하단에 피고 사진기사가 위와 같이 촬영한 가로 15.5cm×세로 10cm 크기의 사진에 원고가 불법 정치자금 논란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부가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는 현재 집권여당인 새천년 민주당의 최고위원, 상임고문 및 3선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으로서 그 행위, 인격에 대하여 공중의 관심을 가지게 하는 위치에 있는 공적 인물이고, 또한 그가 이 사건 기사 보도 당시 정치자금의 불법 지원 여부에 관하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그 자신의 사진, 성명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사진에서 원고가 그 측근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은 비록 그 장소가 원고의 자택 거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것이 원고의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정치자금 지원에 대한 의혹을 받는 상태에서 그 측근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

이 판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택 거실을 사적 장소로 보지 않았고 공인의 사생활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따라 노출이 허용된다고 본 부분이다. 외국

의 경우에는 공인이라고 하여도 사적장소에서의 초상권 침해는 금지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¹⁰⁾

판례 [82]는 유명 벤처기업인도 공인이며 본인의 생활이어서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공인의 수인한도 내로 보아 본인의 예상과 다소 달리 제작·방영되어도 수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이다.

판례 [86]은 필로폰 투약으로 구속된 연예인이 죄수복을 입고 있는 사진, 필로폰 주사 중인 사진을 패러디한 경우로서 인터넷사이트에 삭제요청을 한 바 없다 하여 청구가 기각된 사례이다.

판례 [87]은 배○○ 등 유명연예인의 밀랍인형을 동의 없이 제작하여 유료로 전시하려고 한 경우로서 밀랍인형의 완성도가 떨어져 유명인들의 명성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전시금지가처분을 인용한 경우이다.

판례 [90]과 [106]은 공인의 범위에 대한 사례이다. 대법원은 공인의 범위에 대한 지침을 판시한 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판례의 영향을 받아 공직자(public officer)와 공적인물(public figure)을 공인으로 보고 있으나 전면적 공적 인물(unlimited public figure) 뿐만이 아니라 제한적 공적 인물(limited public figure)도 공인으로 포함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판례 [90]은 제한적 공적인물에 해당하는 지역사회의 목사를 공인으로 인정하고 동의 없는 초상권 사용을 허용하였다. 판례 [123]도 판례 [90]과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판례 [93]은 국회의원을 공인을 본 경우이다. 판례 [110]도 원고가 유명기업인인 경우로 판례 [17] 등과 동 취지이다. 초상권 침해부분은 기각되었다. 판례 [116]과 [125]는 유명인으로 공인에 해당되는 남편의 초상을 명예훼손적 기사에 게재한 것이 처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느냐의 문제를 다룬 경우이다. 판례 [124]는 ○○ 중앙회의 대표자는 공적인물이므로 초상의 공표를 수인하여야 한다고 본 경우이다. 판례 [139]의 사실관계는 초상권 관련 판례 중 해당 침해의

내용과 같은 바 공인이라 하여도 명예훼손적 내용과 결부되어 초상권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초상권 사용의 한계를 보여 준 경우이다.

2. 동의의 방법

(1) 동의를 받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야 한다. 초상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7조는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을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거시하고 있다.

(2)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도 동의로 보아야 한다. 판례 [129]는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함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 판례는 설연휴 실시간 교통상황을 보도하면서 원고가 요금을 징수하는 장면을 3초간 방영한 사안에서 피고의 주장, 즉 이 사건 장면을 촬영할 당시 원고가 자신의 근무장면이 촬영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촬영거부사를 밝히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10) 송석윤, 공적인물의 인격권 및 사생활 보호와 언론의 자유, 언론과 법의 지배 (박영사) 79면 부터 88면 참조

판례 [8]은 초등학생에게 의식화 교육을 시켰다고 진정이 된 교사를 인터뷰한 경우로서 인터뷰를 거절하지 않은 것을 묵시적 동의로 본 경우이다. 또한 묵시적 동의를 인정한 판례는 임○○씨의 결혼식 장면과 관련된 [18]이 있으나 이는 고등법원에서 결론이 뒤바뀌었다(판례 [20] 참조). 경찰관과 동행하여 현행범의 체포현장에서 피의자를 인터뷰한 경우(판례 [44]의 경우)에서 1심은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로 보았으나 고등법원에서는 결론이 바뀌었다. (판례 [53])

신인텔런트였던 피촬영자가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과 이를 사용한 ‘○○한복’의 광고사진과 관련하여 법원은 당시 피촬영자가 비교적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아니한 신인이었는데도 피고가 한복을 제공하고 광고주가 된 경위와 피고측이 촬영당일 원고의 매니저에게 금 250,000원을 지급하게 된 사정, 이 사건 잡지에 실린 광고와 한복사진과의 연관성 정도와 원고가 이 사건 광고가 나온 이후에 취하였던 태도 및 잡지사의 규모나 잡지의 인지도, 여기에 사회통념상 연예계의 신인이라면 오히려 인기연예인과는 반대로 잡지나 방송 등의 매체에 될수록 많은 기회에 자신의 사진이 게재되거나 방송되게 하여 자신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하여 애쓰는 점을 고려하여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였다. (판례 [45] 참조)

판례 [95]는 피촬영자가 남산순환도로에서 차 머플러에 불꽃을 튀기면서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터뷰하는 것을 방영한 것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가 없었다고 본 사례인데 묵시적 동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동의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로 보인다.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경우는 판례 [130]에서 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 [130]은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하였다.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란 본질적으로 참가자들

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작용인 점 및 보도의 자유 역시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언론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헌법상의 권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매체에 게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피촬영자에 대한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다음과 같은 각 점, 즉 ① 사진 등에 나타난 피촬영자의 영상 자체 또는 그 사진과 결부된 기사의 내용이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나(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기사내용과 무관한 피촬영자의 사진을 사용하거나, 피촬영자의 집회·시위의 주도가 아님에도 독자나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인상을 주도록 의도적으로 편집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등), ② 사진 등에 나타난 피촬영자의 영상 자체 또는 그 사진과 결부된 기사의 내용이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순간적으로 촬영된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표정이나 동작의 일부를 전후 설명 없이 보여줌으로써 피촬영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의사표현이나 동작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피촬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도록 의도된 경우 등, 다만 그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어야 한다) 또는 ③ 당해 사진 또는 그에 결부된 기사 자체로는 위와 같은 점이 없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별도의 보도 등과 종합하면 각 위와 같은 효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이 피촬영자에 의하여 주장·입증이 되어야 비로소 초상권에 대한 침해로 보아 보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위와 같은 법리에서 말하는 공공장소란 반드시 그 지점의 소유나 관리형태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일반인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넓게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집회·시위가 사적 영역이면서도 통상은 일반인들에 대한 출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집회·시위가 성격상 일반인들에게 널리 공개될 것을 예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며 일반인들이 통상은 접근하지 않는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다.

판례 [132] [138]도 같은 취지이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등을 허용하고 있는바 초상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추정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촬영·배포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종전에 유명 탤런트였으나 현재는 가정주부인 신청인이 인터넷에 공개되었거나 추정적 동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초상을 사용한 책자의 판매금지를 구하는 사안에서 동 신청을 기각한 판례 [85]가 추정적 동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3. 동意的 범위

(1) 초상권과 관련된 최초의 대법원 판례로 보이는 판례 [34]는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는 위법이다”라고 하여 한 번 동의를 받았다 하여도 그 동의에는 명시적·묵시적으로 시간적, 장소적, 내용적 등으로 제한이 가하여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뒤 판례 [80]은 위 대법원 판례를 구체화하여 “초상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초상권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승낙 여부 및 승낙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떤 구체적

인 동기에 의해 공표를 승낙하였더라도 추후 그 초상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로 공개하거나 동意的 본래 의미와 목적과는 달리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그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또한 당사자가 동의를 한 때에 전혀 고려할 수 없었던 사정 하에서 공표하였다면, 그 공표는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판결을 하기에 이르렀다.

(2) 동意的에 초상의 사용목적이 정하여져 있었는데 그 사용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는 위법이다. 카탈로그용 사진을 월간잡지에 사용한 경우(판례 [3], [4]), 여성 백과사전에 수록되기로 한 사진을 신년홍보물에 사용한 경우(판례 [10]), DVD에 사용하기로 한 초상을 영상화보집에 사용한 경우(판례 [12], [99]),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그 프로그램이 비디오테이프 제작되어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경우(판례 [41], [47]), 요가비디오 상의 초상을 홍보용 비디오에 사용한 경우(판례 [72]), 뮤직비디오용 촬영 초상을 DVD에 사용한 경우(판례 [102], [103]), 호스피스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방송이라고 하였으나 소극적 안락사에 인터뷰를 사용한 경우(판례 [105]), 월간 영화 잡지용 제공 초상을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우(판례 [112]) 등이 있다.

동意的에 계약기간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음에도 그 제약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이다.¹¹⁾ 동意的에 신분노출방지의 조건이 있었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도 위법이다.¹²⁾ 동의를 하였을 당시 피촬영자의 예상과는 달리 사용한 경우도 초상권 침해의 경우로 본다.¹³⁾

— 유명 연예인이 선전용 책자로서 사진영상집을 발간하여 유·무상으로 일반대중에게 배포한 바 있는데 동 영상집 속의 초상을 명예훼손 내용과 같이 사용한 경우

11) 판례 [7], [30], [46], [75], [77], [88], [109], [113], [117] 참조

12) 판례 [19], [34], [38], [71], [91], [97], [121], [140], [142] 참조

13) 판례 [5], [20], [31], [42], [49], [78], [80], [82], [118], [126], [128] 참조

- 자신의 결혼식 장면을 촬영하는데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 하여도 촬영한 사진 또는 화면을 향후 어떠한 목적에 사용하든 상관없이 일체의 공표에 대하여 동의하였거나 초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촬영자가 공인이라 하여도 명예를 훼손시키는 방법으로 초상이 공표되는 것은 초상권의 침해라고 본 경우
- 공인인 원고의 사진을 김일성 또는 김정일의 사진과 나란히 게재하여 원고가 공산주의자인 듯한 인상을 부여한 경우
- 연비항상에 실효가 있는 제조업자를 연비항상에 실효가 없는 업자들과 함께 출연시키면서 연비항상장치가 과장광고인 것처럼 보도한 경우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사망한 김○중위의 사인과 관련하여 부소대장인 원고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 애쓴 듯한 인상을 풍기는 장면을 편집하여 보도한 경우
- ○○선교회에서 취재한 동영상 중 원고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입을 크게 벌려 ○○○목사로부터 불을 받아들인다는 장면을 피고 운영의 홈페이지의 취재현장란에 취재기사와 함께 25초 분량으로 게재한 경우
-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어렵게 살아온 사람의 베스트셀러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데 이를 짧게 편집하여 보험모집인들의 교육 등에 사용한 경우
- 신세대 경영인으로 알려진 원고가 소속 회사와의 갈등 등을 제보, 인터뷰하려고 하였으나 이와 달리 신세대 경영인으로 잘못 알려지게 된 점에 대한 언론의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부각한 경우로서 사생활이어서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방송이 본인의 예상과 다소 달리 제작 반영되어도 수인하여야 한다고 본 경우
- 결혼정보업체 대표와의 교제 중 상습폭행문제 등 동의 없이 방영되었거나 동의 후 방영되었어도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과 용도로 재차 방영되었음을

이유로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본 경우

- 당초 예상과는 다른 형태로 원고가 한번에 35명까지 사권 경력이 있는 ‘바람둥이’라는 표현의 자막과 함께 피촬영자의 영상을 사용한 경우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장면을 담은 피촬영자들의 영상을 폐기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3개 프로그램에서 다시 방송한 경우
- (3) 판례 [94]에서와 같이 동의에 대한(범위도 포함) 입증책임은 초상을 유포한 사람에게 있다.
- (4) 동의는 각각의 경우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동의를 하는 시점에서 어느 용도로 사용될지 알 수 없는데도 어느 용도로 사용하던지 상관없다는 식의 포괄적 동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례 [95] 참조)

추정적 동의의 반대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하였으나 원고의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내보내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은 판례 [51]의 경우이다.

Ⅲ. 글을 맺으며

특정인의 초상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 그 특정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동영상 등 초상의 확보 및 배포가 상당히 자유로워진 현실에서 민감한 문제이다. 판례에 나타난 사례들을 분석하면 피촬영자가 공인인 경우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초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은 예외이다.

피촬영자가 사인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야만 초상을 작성·사용할 수 있으나 피촬영자가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에 참여한 경우나 보도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보도내용과 관련성이 있고 초상권자의 초상이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동의

없이도 사용되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있다.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경우는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본 판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판례도 있다.

동의를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지만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명시적으로 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야 함이 원칙이다. 동의는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로 공개되거나 동의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불리한 방법으로 사용돼서는 아니고 동의를 할 때에 전혀 고려하지 못한 방법으로 초상이 사용돼서도 아니된다. 동의는 동의권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 각각의 경우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포괄적인 동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례〉

순번	사건번호	침해의 태양	침해의 대상	침해의내용	동의 여부	판결	비고
1	820721-서울 82가합9263 결정	서적	재벌 (공인)	울산그룹의 시작부터 몰락까지의 과정을 그리 면서 책의 뒤표지에 울산그룹 대표 및 임원과 대표의 처 사진을 게재한 경우	무동의	판매 및 발행 금지 가처분 인정	
2	880511-서울 87가합6175 판결	광고 전단	모델 (공인)	한복을 입고 비녀를 꽂은 원고의 사진을 광고 삽화로 일러스트레이션하였으나 일러스트레이 션한 광고삽화가 원고라고 식별할 수 있을 정 도가 아닌 경우	무동의	기각	피해자 특정
3	880909-서울 87가합6032 판결	월간 잡지 광고	탈런트 (공인)	유명탈런트와 의류 카탈로그용 모델계약을 체 결한 후 촬영을 마친 카탈로그용 사진을 무단 으로 월간잡지에 사용한 경우	동의 범위 초과	800만원	
4	890123-서울 고등 88나 38770 판결	월간 잡지 광고	탈런트 (공인)	[3] 참조	동의 범위 초과	400만원	[3]의 2심
5	890725-서울 88가합31161 판결	여성 월간 잡지	연예인 (공인)	유명연예인이 선전용 책자로서 사진영상집을 발간하여 유·무상으로 일반대중에게 배포한 바 있는데 동 영상집 속의 초상을 명예훼손 내용과 같이 사용한 경우	예상과 달리 사용	1000만원 사과문 게재	2심은 1심을 그대로 인용하여 쌍방향초기각 쌍방 상고허가 신청기각
6	900125-동부 89가합13064 판결	연하 카드	승마 협회 홍보 이사 (사인)	서울올림픽의 성화봉송행사에서 찍은 원고의 초상이 포함된 사진을 동의 없이 연하카드 포 지에 사용한 경우	무동의	500만원	
7	910725-서울 90가합76280 판결	방송 광고	모델 (공인)	모델인 원고와의 커피광고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텔레비전에 광고를 방영한 경우	동의 범위 초과	11,684,782원	최초의 퍼블리시티권 판례
8	920220-남부 89가합13975 판결	방송	교사 (사인)	초등학생들에 대한 의식화 교육과 관련하여 인터뷰 내용이 방송될 것을 예상하고 교사가 대담에 응한 경우	동의	기각	초상권을 프라이버시티권의 하나로 본 판결
9	920516-서울 92가44613 확정	서적	연예인 (공인)	유명연예인의 이름과 캐리커처를 사용하여 유 머집을 출판한 경우	무동의	판매금지 가처분 인정	
10	920922-서울 92가합12051 판결	포스터 · 현수막	모델 (사인)	여성백과사전에 게재된 사진을 은행 신년홍보 물(포스터, 현수막)에 별도의 동의 없이 사용 한 경우	동의 범위 초과	500만원	
11	930708-서울 92가단57989 판결	주간지	대학생 들 (사인)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원고들이 이화여자대학 교 정문 앞을 걸어 나오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사치와 과소비 또는 배금주의 풍조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문제들 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사의 중간에 위 사 진을 삽입한 경우	무동의	각 3000만원	사진은 이경률외 1인 '상업사진의 초상권 침해와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에 게재
12	930908-서울 93가44057 결정	영상 화보집	연예인 들 (공인)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는 계약 체결 후 촬영한 뮤직비디오를 이용하여 DVD를 제작하면서 별도의 영상화보집을 제작판매한 경우	동의 범위 초과	원고1 6000만원 · 원고2,3 각 1000만원	퍼블리시티권
13	940330-서울 93나31886 판결	주간지	대학생 들 (사인)	[11] 참조	무동의	각 2000만원	[11]의 2심

순번	사건번호	침해의 태양	침해의 대상	침해의내용	동의 여부	판결	비고
14	941027-서울 94가합36754 판결	월간 잡지	사인	압구정동 오렌지족이라 불리는 일부 젊은이들의 무분별한 과소비와 향락적 생활을 비판적으로 다루는 기사 중간에 커피숍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 후 귀가하면서 젊은 남자가 업소 선전용 명함을 제시하는 것을 스쳐보며 웃는 피촬영자들의 사진을 삽입한 경우	무동의	원고1,2 각 1000만원 · 원고3 800만원	
15	950613-인천 94가합16812 판결	(지상파) 방송	사인	실리콘팩을 이용한 유방확대수술의 피해자가 주위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조건으로 「뉴스데스크」프로그램에 이어 「PD 수첩」에 인터뷰를 한 사안으로 방송사는 동 조건을 갖추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동의	기각	
16	950623-서울 96가합9230 판결	서적	해물리 학자 (공인)	'소설 이휘소' 및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모델인 이휘소의 상속인들이 소설의 저자, 발행인들을 상대로 프라이버시권,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출판등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무동의	일부 인정 (가족사전에서 가족들의 초상권 인정)	퍼블리시티권
17	950927-서울 95가합3438 판결	서적	재벌 (공인)	김○○의 일대기를 책으로 내면서 표지에 사진을 사용한 경우	무동의	기각	사진은 이경률외인 전계 논문 참조
18	951124-남부 95가합13495 판결	방송	임○○ (공인)	공인인 피촬영자의 결혼식 장면은 국내 대부분의 언론기관에 의하여 이미 공표된 것이기 때문에 '결혼식 장면에서의 피촬영자의 초상'은 묵시적으로 공표를 승낙한 것으로 보임으로 공표가 승낙된 위 결혼식 장면에서의 피촬영자의 초상을 고가의 웨딩드레스와 관련된 사안에 반영하였다 하여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안	묵시적 동의	기각 (명예훼손은 인정)	초상권을 명예권의 중속적인 권리로 본 사례
19	960202-서울 고등 95나 25819 판결	방송	사인	피촬영자의 신분노출과 관련하여 원고의 모습을 비록 그림자처리 하였으나 그 그림자에 원고의 눈, 코, 입모양과 머리모양이 섬세하게 나타나고 음성은 변조하지 않았으므로 인터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동의 범위 초과	5000만원	[15]의 2심
20	960618-서울 고등 96나1282 판결	방송	임○○ (공인)	자신의 결혼식 장면을 촬영하는데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 하여도 촬영한 사진 또는 화면을 향후 어떠한 목적에 사용하든 상관없이 일체의 공표에 대하여 동의하였거나 초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촬영자가 공인이라 하여도 명예를 훼손시키는 방법으로 초상이 공표되는 것은 초상권의 침해라고 본 사례	예상과 달리 사용	1000만원	[18]의 2심
21	960906-서울 95가합72771 판결	만화	카레 이서 (공인)	카레이서인 원고의 성명과 유사한 이름의 주인공을 등장시킨 '아스팔트의 사나이'라는 만화에서 원고를 기업비밀물의 조언으로 비하시켰다고 주장한 사안	무동의	기각	모델만화 퍼블리시티권 서울고등법원 1997.7.22선고 96나41016 판결은 항소기각
22	970226-서울 96가합31227 판결	여성잡지	예전 배우 (사인)와 부모	공인이 아닌 피촬영자들이 게재를 허락하지 않은 사진을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에 덧붙여 그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로 사용한 경우로서 배우 윤○○씨의 동생을 딸로 추측한 경우	무동의	원고1 5000만원 · 원고2,3 각 250만원	서울고등법원 1997.9.30선고 97나4240 판결은 1심과 내용이 같으나 손해배상액만 원고1에게 4000만원 원고2,3에게 각 1000만원 인정

순번	사건번호	침해의 대양	침해의 대상	침해의내용	동의 여부	판결	비고
23	970801-서울 97가합16508 판결	광고	탤런트 (공인)	임꺽정 배역으로 출연하였던 원고 얼굴의 특 징적 부분들을 무단 스케치로 재현한 인물화 를 위장약의 전면광고에 삽입한 경우	무동의	2000만원	퍼블리시티권
24	970807-남부 97가합8022 판결	(지상파) 방송	대학생 들 (사인)	신입생 환영회 모습을 긍정적으로 방송하겠다 는 조건부 승낙에 위반하여 '공포의 통과의 례' 라는 제목으로 피촬영자들이 퇴폐적인 유 흥에 몰든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 것처럼 촬영 하고 일부 피촬영자들의 동의 없이 화장실에 서의 대화 장면을 촬영하고 방영한 경우	동의 범위 초과, 무동의	원고1 600만원 · 원고2 200만원 · 원고3,4 각 400만원	초상권의 근거를 헌법 제10조, 민법 제751조 제1항으로 봄
25	970829-서부 94가합13831 판결	상품	외국 배우 (공인)	제임스 단의 유족이 허락 없이 제임스 단의 이름과 초상을 사용하지 말 것과 허락 없이 의복에 이름과 초상을 사용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 사안	무동의	가각	퍼블리시티권
26	971107-서울 97가합20064 판결	사진집	대중 가수 (공인)	월간잡지의 별책부록으로 원고들의 방송 출연 장면들을 찍은 사진들을 모아 사진집을 제작 하여 본책과 함께 판매한 경우	무동의	원고1 7000만원 · 원고2 내지6 각 3000만원	
27	971121-서울 97가합5560 판결	상품	외국 배우 (공인)	[25]의 원고가 유동업체를 상대로 표장사용금 지와 표장 및 인쇄설비의 폐기를 청구한 소송 에서 [25]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면서 퍼블리시 티권에 저작권법상의 저작자의 권리에 기한 사후 존속기간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무동의	가각	퍼블리시티권
28	980113-서울 고등 97나 43156 판결	방송	사인	[24] 참조	동의 범위 초과, 무동의	항소가각	[24]의 2심
29	980227-동부 97가합15881 판결	월간잡지	사인	인터뷰를 한 적도 없고 사진사용에 동의한 적 이 없음에도 '내가 연하의 남자와 사귀는 이 유' 라는 제목의 자유기고가 글 중에 피촬영자 들의 사진을 게재한 경우	무동의	원고1 1500만원 · 원고2 2000만원	원고들 항소는 서울고등법원 1998.11.3선고로 기각됨
30	980327-서울 고등 97나 29686 판결	월간잡지	탤런트 (공인)	탤런트인 원고가 변비치료제의 영상광고물에 모델로서 출연하면서 보수만 정하였을 뿐 계 약기간이나 광고매체를 특정하지 않은 사안에 서 계약기간은 1년이 상례임을 이유로 그 이 후의 광고는 불법이라고 판단한 사례	동의 범위 초과	4250만원	1심은 서울지방법원 1997.6.4선고 96가합66353 판결
31	980701-서울 97가합88220 판결	월간잡지	김대중 (공인)	공인인 원고의 사진을 김일성 또는 김정일의 사진과 나란히 게재하여 원고가 공산주의자인 듯한 인상을 부여한 경우	예상과 달리 사용	4000만원	※관련판결 서울지방법원 1997.10.10선고 97가합2923 판결
32	980709-서울 고등 97나 47790 판결	방송	사인	연비항상에 실효가 있는 제조업자를 연비항상 에 실효가 없는 업자들과 함께 출연시키면서 연 비항상장치가 과장광고인 것처럼 보도한 사안	동의 범위 초과	2000만원	1심은 1997.8.28 선고 96가합 12130판결
33	980819-서울 97가합96337 판결	월간잡지	대학 교수 (사인)	인터뷰를 거절하였음에도 유명작가인 처와의 만남 등을 기사화하면서 대학교 졸업앨범에 나와 있는 사진을 동의없이 게재한 경우	무동의	2500만원	

순번	사건번호	침해의 태양	침해의 대상	침해의내용	동의 여부	판결	비고
34	980904- 대법원 96다 11327 판결	방송	사인	[15] 참조	동의 범위 초과	상고기각	[15]의 3심
35	980929-서울 고등 98라35 결정	서적, 브로 마이드	박○○ (공인)	박○○ 평전을 출판하면서 서적의 내표지 및 내용부분에 원고의 사진을 사용한 경우	무동의	기각	1심은 동부지원 1998. 1. 15 선고 97가합3478결정. 사진은 이경률외 1인 전계논문참조
36	981103-서울 고등 98나 18557 판결	월간잡지	사인	[29] 참조	무동의	원고들 항소기각	[29]의 2심
37	990316-남부 99가합451 결정	사진촬영	교인 (사인)	○○교회와 관련된 사건으로 장래의 법적 분 쟁에 대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동의 없 이 피촬영자들이 PD와 면담하는 장면을 촬영 한 경우지만 촬영경위나 목적 등에 비추어 위 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무동의	기각	서울고등법원 1999.5.20선고 99라108 결정은 1심을 그대로 인용
38	990402-남부 98가합16587 판결	방송	일용 노동자 (사인)	자신의 신원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전직 인신매매 조직원인 것처럼 촬영, 방영한 경우	동의 범위 초과	원고1 3000만원 원고2 2000만원	
39	990430-서울 98가합79858 판결	포스터 등	사인	세계적인 헤어드레서인 비달사순의 이름과 초 상을 간판 등에 사용한 경우로서 퍼블리시티 권을 주장한 경우	무동의	표장 사용 금지 등	2심은 서울고등법원 2000.2.2선고 99나26339 판결
40	990514-서울 98가단779 판결	방송	카드 회사 영업 소장 (사인)	음주운전자의 촬영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누구 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촬영을 한 경우	부동의	2000만원	
41	991001-서울 99가단51980 판결	비디오 테이프 판매	택시 운전 기사 (사인)	도주차량 검거 모범운전자를 인터뷰 동의를 얻어 촬영하고 일요스페셜 프로그램에 방영하 였는데 영상사업단이 이를 비디오테이프로 제 작하여 소정의 대가를 받고 판매한 경우	동의	기각	
42	991008- 대법원	방송	제조 업자 (사인)	[32] 참조	예상과 달리 사용	상고기각	[32]의 3심
43	991022-서울 고등 99나 49001 판결	방송	카드 회사 영업 소장 (사인)	[40] 참조	부동의	1500만원	[40]의 2심
44	991119-서부 99가합4672 판결	신문, 방송	대학 교수 (사인)	음대교수가 음대지망생에게 과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몰래카메라로 무단촬영으로 취재 보도 하였다고 주장한 경우	묵시적 동의	초상권 부분은 기각	
45	000316-서울 99가합46206 판결	잡지	탤런트 (공인)	원고가 모델이 되어 촬영한 사진 가운데 일부 가 피고측의 광고용 사진으로 사용된 경우 원 고가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하지 무단으 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경우	묵시적 동의	기각	
46	000516-서울 고등 99나 30444 판결	포장용기	탤런트 (공인)	광고계약기간 종료 후에 계속하여 원고의 상 반신 사진이 인쇄된 포장용기를 사용한 경우	동의 범위 초과	2000만원	1심은 서울지법 1999.5.18선고 98가합69363 판결

순번	사건번호	침해의 태양	침해의 대상	침해의내용	동의 여부	판결	비고
47	000704-서울 99나83698 판결	비디오 테이프 판매	택시 운전 기사 (사인)	[41] 참조	동의 범위 초과	200만원	[41]의2심 초상권 의 근거를 [24]와 동일하게 봄
48	000714-서울 99가합84901 판결	상품 등	공인	제임스 닐의 퍼블리시티권을 양도받았다는 원 고가 제임스 닐의 성명 등을 이용한 상표를 등록한 피고에게 침해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 한 사안	무동의	가각	
49	000823-서울 99가합30768 판결	방송, 신문	육군 중사 (사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사망한 김○○중위 의 사인과 관련하여 부소대장인 원고가 자신 의 알리바이를 위해 애쓴 듯한 인상을 풍기는 장면을 편집하여 보도한 경우	예상과 달리 사용	7000만원 등	
50	001011-서울 99가합109817 판결	방송, 신문 (문화 방송 등)	사인	유명연예인과 성교 중인 피촬영자의 등쪽 상 반신이 나오는 비디오테이프 중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전환하여 게재한 경우	무동의	피고1 2억 · 피고2,3 6000만원 · 피고4 1억2천만원	
51	001011-서울 2000가합 4673 판결	방송	법원 사무관 (공인)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하였으나 원고의 초상을 방송을 통해 그대로 내보내는 것에 승인하였 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경우	동의 범위 초과	피고1 500만원 · 피고2 200만원	
52	001025-동부 2000가단 21636 판결	방송	식당 종업원 (사인)	물러카메라로 원고의 얼굴과 모습을 촬영 보 도함으로써 원고의 직업이 식당종업원임을 알 게한 경우	부동의	100만원	
53	010111-서울 고등99나 66474 판결	방송	대학 교수 (사인)	유명대학 음대교수가 개인교습장을 차려놓고 레슨을 하는 장면을 경찰관과 동행하여 촬영, 보도하였으나 출입이나 인터뷰, 촬영에 동의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경우	무동의	1000만원	[44]의 2심
54	010112-서부 98가합14245 판결	월간잡지	조00 (공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 포함된 기 사와 함께 원고의 허락 없이 사진을 게재한 경우	무동의	2000만원	
55	011010-서울 2001가합1961 판결	방송	사인	「공개수배 사건25시」라는 프로그램에서 피촬 영자를 여권사기, 밀매 등의 중대피의자로 보 도하면서 피촬영자의 초상을 방영한 경우	무동의	원고1 1000만원 · 원고2 (원고1의 처) 각 400만원 · 원고3,4 (원고1의 자) 각 2000만원	
56	011219-서울 2001가합 8399 판결	신문	연예인 (공인) · 사인	스포츠서울 1면 우측에 「신○○ '신부' 공개」 라는 제목 하에 피촬영자의 동의도 없이 대학 졸업앨범 사진을 싣고 36면에 「신○○ 올봄 결혼」이라는 제목과 「미스코리아 뉴욕 진 출 신 9살 연하 윤○○씨와」라는 소제목 아래에 기사를 게재한 경우	무동의	원고1 1000만원 · 원고2 2000만원	
57	020131-서울 고등 2001나 9689 판결	월간잡지	유명 기자 (공인)	[54] 참조	무동의	항소가각	프라이버시권을 명예권의 중된 권리로 봄 [54]의 2심

순번	사건번호	침해의 태양	침해의 대상	침해내용	동의 여부	판결	비고
58	020328-서울 고등 2001나 48486 판결	방송	의사 (사인)	인터뷰 당시 촬영에 부동의 하였음에도 원고 의 허반신만 나오는 화면이 사용된 경우	부동의 내지 조건부 동의	기각	1심은 서울지법 2001.7.25선고 2000가합51563 판결 초상권 주장은 2심에서 추가 병합됨
59	020416-서울 고등 2002나 42061 판결	상품 등	공인	실정법상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퍼블리시티 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48] 참조	무동의	기각	[48]의 2심
60	020822-서울 고등 2001나 66293 판결	방송	사인	[55] 참조	무동의	항소기각	[55]의 2심
61	020830-성남 2001가합 5032 판결	상품, 홍보물	프로 골퍼 (공인)	프로골퍼와 체결한 홍보모델 사용권 계약상의 권리를 이전받은 자가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프로골퍼의 사진 등이 게재된 광고를 계 속한 경우	무동의	2000만원	초상권을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상업적 권리로서의 초상 권(퍼블리시티권) 으로 구별
62	021011-남부 2001가합 14741 판결	방송	사인	A방송사 제작진이 짝동동호회 회원들에게 동 호회를 소개한다고 인터뷰를 하였는데 막상 방송에는 당초 취지와 전혀 다르게 인터뷰를 편집하여 방송하는 바람에 회원들의 초상권이 침해당한 경우로 보아 이를 B방송사가 문제 삼은 경우	동의	기각	
63	021206-서울 2002가합 13985 판결	신문	정치인 (공인)	공인인 정치인이 자택거실에서 측근들과 회의 를 하고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으나 공인의 수인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한 경우	무동의	기각	몰래카메라
64	030110- 대법원2002다 56628판결	사진촬영	변호사 (사인)	국가정보원 직원이 접견거부를 당하였다는 억 지주장을 대비하기 위한 증거수집차 사진촬영 을 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부동의	상고기각	2심은서울지법 2002.9.4선고 2001나66139 판결
65	030110-서울 2001가합 38642 판결	신문 방송	지휘자 (사인)	승낙을 받은 바 없음에도 피촬영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부분이 포함된 지휘장면을 배경화면 으로 사기사건을 보도하였으나 원고의 모습이 포함된 연주회 실황장면은 보도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원고의 모습이 화면으로 방영되 는 부분은 보도목적에 비추어 필요하고 상당 한 정도에 그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한 경우	무동의	기각	
66	030213-서울 2002가단 234723 판결	사진 (증거자료 제출)	사인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는지 여부를 증거로 제 출할 목적으로 몰래카메라로 원고들을 촬영한 경우	무동의	원고1,2 각 200만원 · 원고3 100만원	몰래카메라
67	030704-서울 2002가합 78777 판결	방송, 신문, 잡지	연예인 (공인)	연예인인 원고가 강간처상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습을 방영하는 것은 공인의 수인한도 내로 보아 초상권침해를 부인한 경우	무동의	기각	인터뷰
68	040206-서울 2003나13979 판결	사진	사인	[66] 참조	무동의	원고 청구기각	[66]의 2심

순번	사건번호	침해의 대상	침해의 대상	침해의내용	동의 여부	판결	비고
69	040212-동부 2002가합 3370 판결	홈쇼핑 광고	연예인 (공인)	퍼블리시티권을 양도받은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허브차 훈'이라는 상표를 붙인 좌훈기 광고를 홈쇼핑 방송에 무단 방영한 행위에 대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서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근거나 배상액의 산정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무동의	기각	
70	040408-서부 2003가합 2796 판결	케이블 방송	연예인 (공인)	동의 없이 촬영한 초상을 제품광고 영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는 경우	무동의	기각	
71	040520-남부 2003가합 8979 판결	방송	사인들	신분노출방지를 조건으로 가정폭력사례의 인터뷰에 응하였으나 신분노출방지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경우	동의 범위 초과	원고 1 1000만원 · 원고2 (자녀) 300만원 · 원고3,4 (자녀) 각 700만원 · 원고7 (인권 상담소 직원) 100만원	
72	040804-남부 2004가합 1285 판결	홈쇼핑 방송	미스 코리아 (공인)	피신청인 회사가 제작한 요가복 및 요가매트의 판매를 위하여 신청인의 요가동작을 촬영한 요가비디오를 끼워팔면서 홍보용 비디오 및 이미지사진을 방영한 경우	동의 범위 초과	방송 및 판매금지	
73	041001-서울 2002가단 254093 판결	인터넷 사이트	탤런트 (공인)	드라마 속 주인공인 원고의 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통신판매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경매할 상품으로 등록하고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무동의	5000만원	퍼블리시티권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하여 배척
74	041012-서울 고등 2003나 55334 판결	방송, 신문, 잡지	연예인 (공인)	[67] 참조	무동의	피고5,6 1000만원 (연대) · 피고7 3000만원	[67]의 2심 초상권 침해부분은 공인임을 이유로 부정됨
75	041210-서울 2004가합 16025 판결	광고 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연예인 (공인)	화장품재고를 저가로 양도하면서 방문판매원의 교육 등을 위하여 (원고의 사진이 포함된) 제작책자를 함께 넘겨준 경우	동의 범위 초과	1500만원	화장품광고사진은 이경을 와인 전계논문참조
76	050113-수원 2004가단 20834 판결	포스터, 플래카드	연예인 (공인)	의상협찬을 요청한 영화제작사가 보내준 화보 촬영사진을 이용하여 포스터와 플래카드를 제작한 후 교복판매점에 공급한 경우로서 원고는 화보촬영사진의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무동의	5000만원	퍼블리시티권 인정
77	050622-서울 고등 2005나 9168 판결	광고책자 등	연예인 (공인)	[75] 참조	동의 범위 초과	항소기각	[75]의 2심 퍼블리시티권 인정
78	050830-북부 2004가단 59130 판결	인터넷 동영상	목사 또는 전도사	○○선교회에서 취재한 동영상 중 원고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입을 크게 벌려 ○○○목사로부터 불을 받아들인다는 장면을 피고 운영의 홈페이지의 취재현장란에 취재기사와 함께 25초 분량으로 게재한 경우	예상과 달리 사용	각 2500만원	

순번	사건번호	침해의 태양	침해의 대상	침해내용	동의 여부	판결	비고
79	050907-서울 2004가합 84950 판결	신문 광고 등	연극 배우 (공인)	무단으로 신문광고 등에 원고의 이름과 초상을 사용한 경우	무동의	3000만원	
80	050922-남부 2005가합 2739 판결	비디오 테이프, 도서	사인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어렵게 살아온 사람의 베스트셀러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데 이를 짧게 편집하여 보험모집인들의 교육 등에 사용한 경우. ①동의 후 초상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로 공개하거나 ②동의의 본래 의미, 목적과는 달리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불리한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③동의시 전혀 고려할 수 없었던 사정하에서 공표하는 경우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초상권 침해라고 인정한 사례	예상과 달리 사용	각 500만원	
81	050927-서울 2004가단 235324 판결	인터넷 콘텐츠	연예인 (공인)	원고의 캐릭터를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에 제 공하면서 캐릭터 옆에 원고의 이름과 원고가 유행시킨 유행어를 동시에 게재하여 놓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도록 한 경우	무동의	500만원	퍼블리시터권
82	051007-서울 2004가합 46767 판결	방송	사업가 (공인)	신세대 경영인으로 알려진 원고가 소속 회사와의 갈등 등을 제보, 인터뷰하려고 하였으나 이와 달리 신세대 경영인으로 잘못 알려지게 된 점에 대한 언론의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부각한 경우로서 사생활이에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방송이 본인의 예상과 다소 달리 제작 방영되어도 수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예상과 달리 사용	기각	
83	051228-서울 2005가합 19052 판결	공중파 방송	사인	[108] 참조	무동의	2000만원	
84	060120-서울 2005가합 26111 판결	방송	사인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취재하기 위하여 해외인턴십 알선업체에 신분을 속이고 몰래카메라로 취재하였으나 원고 회사임을 알 수 있는 건물외경, 사무실 입구 등과 직원들을 모두 모자이크 처리하였고 음성도 변조하였으므로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경우	무동의	기각	몰래카메라
85	060306-서울 2006가합651 판결	잡지, 광고	종전텔 런트 (사인)	게재된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었거나 신청인의 동의 하에 촬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판매등급지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추정적 동의	기각	
86	060512-서울 2004가단 292358 판결	인터넷	연예인 (공인)	필로폰 투약으로 구속된 원고와 관련하여 죄수복의 원고사진, 필로폰 주사 중인 원고의 패러디 사진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경우로서 삭제요청이 없었다 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무동의	기각	
87	060614-서울 고등 2006라 229 결정	밀랍인형	연예인 (공인)	동의 없이 밀랍인형을 만들었으나 완성도가 떨어져 명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에도 밀랍인형들을 유료전시하려고 한 경우	무동의	가처분 인용	1심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6.2.1 선고 2005가합4461 결정
88	060614-성남 2006가합 2595 판결	월드폰 카드 광고	연예인 (공인)	원고의 초상이 포함된 광고를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게재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고 광고 제작물에 대한 편집권(카피문구나 하트모양의 삽입)이 초상권이나 실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지 않은 사례	동의 범위 초과	기각	

순번	사건번호	침해의 대양	침해의 대상	침해의내용	동의 여부	판결	비고
89	060707-동부 2005가합 14302 판결	방송	사인	부모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신생아를 촬영 하였는데 세쌍둥이 미숙아로 오인시킬 소지가 있었던 경우	무동의	각 300만원	
90	060714-대구 2005가소 449079 판결	인터넷 잡지	목사 (공인)	지역사회의 공인인 원고의 초상을 동의 없이 기사에 게재한 경우이지만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경우	무동의	기각	
91	060720-안산 2005가단 16980 판결	방송	사인	신문노출방지 약속 하에 무면허 의료업자에 의한 코 부위 파라핀주사 후유증으로 고생하 고 있다고 보도하였는데 눈을 포함한 그 윗부 분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코를 비롯한 그 아래 부분이 선명하게 드러나 원고가 특정된 경우	동의 범위 초과	700만원	
92	060921-서부 2006가소 63201 판결	인터넷 사이트	사인	피고 운영의 인터넷 사이트 중 에로틱 분류에 원고의 사진이 무단게재되었음에도 원고 측의 항의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무동의	2000만원	
93	061013-서울 2006가합 71378 판결	방송	국회 의원 (공인)	국회의원이 국회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에 상임위배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 방송한 경우	무동의	기각	물라카메라
94	061013- 대법원 2004다 16280 판결	사진(증거 자료제출)	사인	[66] 참조	무동의	파기환송	[66]의 3심
95	061109-남부 2005가합 18444 판결	방송	사인	피촬영자가 남산 순환도로에서 차 머플러에 불꽃을 튀기며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인터뷰하는 것에 동의하였지만 피촬 영자가 어느 방송에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알 지 못하였기에 초상 사용을 목적으로 동의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동의 범위 초과	500만원	
96	061129-서울 2005가단 286190 판결	방송	의사 (사인)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MRSA 슈퍼박테리아 병원감염위험'이라는 프로그램 중에 피촬영자 에 관한 기사가 담긴 신문(피촬영자의 상반신 이 촬영된 사진 포함)을 촬영, 방영한 경우	무동의	1000만원	
97	061129-서울 2006가합 3629 판결	방송	사인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연주장면을 촬영하 여 드라마에 삽입하겠다는 약속을 어겨 예정 한 방법과 달리 연주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 는 상태로 방송된 경우	동의 범위 초과	각 200만원	
98	061221-동부 2006가합 6780 판결	문화 상품권	소설가 (공인)	이○○의 초상 등이 포함된 문화상품권을 발 행한 경우로서 퍼블리시티권은 사후 50년간 존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무동의	기각	일반인에게도 퍼블리시티권 인정
99	070110-남부 2006가단 56477 판결	방송	사인	국제결혼 정보업체가 주선한 국제가정송년회 모임에서 원고들이 무대로 나와 노래하며 춤 추는 장면을 원고들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36 초간 방영한 경우	무동의	원고들 각 100만원 (초상권부분)	
100	070119-서울 2006가단 250396 판결	인터넷 사이트	연예인 (공인)	원고 코미디언들이 출연 중인 코너를 원고들의 허락 없이 모방하여 이벤트 화면을 제작한 경우	무동의	800만원	
101	070124-서울 2006가합 24129 판결	월간 잡지	예전 탤런트 (사인)	이미 공개되어 있던 것이거나 동의 하에 촬영 된 것으로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상권 침해를 부정한 사례	무동의	기각	단, 프라이버시권 침해는인정 [85]의 관련판결

순번	사건번호	침해의 태양	침해의 대상	침해의내용	동의 여부	판결	비고
102	070125-서울 20057합 101005 판결	DVD	연예인 들 (공인)	원고들은 뮤직비디오 촬영계약만을 하였는데 피고가 뮤직비디오를 DVD로 제작하여 검과 함께 판매한 경우	동의 범위 초과	원고1 기각 · 원고2 1000만원 · 원고3 3000만원 · 원고4,5 각 2000만원	
103	070125-서울 20057합 111590 판결	DVD	연예인 (공인)	[102]와 동일	동의 범위 초과	1000만원	
104	070131-서울	영상 화보집	연예인 (공인)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동의 없이 영상화보집을 제작, 판매한 경우	동의 범위 초과	원고1 6000만원 · 원고2,3 각 1000만원	
105	070504-남부 20067합 9577 판결	방송	사인	호스피스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방송이라는 설명에 인터뷰에 응하였으나 소극적 안락사 문제에 원고의 인터뷰 내용을 사용한 경우	동의 범위 초과	1000만원	인터뷰
106	070621-대구 2006나11409 판결	인터넷 잡지	목사 (공인)	위법성 조각사유의 판단 사례	무동의	항소기각	[90]의 2심
107	070725-서울 고등 2006나 80294 판결	방송	사인	위법성조각사유의 판단사례	무동의	피고3,4 700만원 · 피고2,6 400만원	[89]의 2심
108	070919-서울 고등 2006나 106066 판결	방송	사인	분양대행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회사 사무실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 방영한 경우	무동의	2000만원	[83]의 2심
109	071024-서울 20067합 63759 판결	포장지등	연예인 (공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치킨제품 포장지 전면 우상단에 원고의 인물캐릭터를 계속 사용한 경우	동의 범위 초과	2000만원	
110	071101-남부 20067합 14784 판결	방송	사업가 (공인)	바다이야기라는 도박게임과 관련하여 원고가 역대로비를 하였다고 보도하면서 원고의 사진 및 회사의 동영상을 사용한 경우	무동의	각 5000만원	초상권침해 부분은 부정됨
111	071106-남부 20077합 13887 판결	방송	노조 조합장 (사인)	원고의 초상이 이미 공개되어 있고 기사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으며 출처를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없다고 한 경우	무동의	기각	
112	071114-서울	인터넷 모바일 사이트	연예인 들 (공인)	월간 영화잡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제공된 원고들의 사진이 일본 내 휴대전화 이용자들에게 유료로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게 한 경우	동의 범위 초과	원고1,2,3,5 각 1500만원 · 원고4 500만원 · 원고6 1000만원	

순번	사건번호	침해의 대양	침해의 대상	침해의내용	동의 여부	판결	비고
113	071128-서울 2007가합 2393 판결	인터넷 홈페이지	운동 선수 (공인)	피고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의 초상과 함께 광고문구를 계속 사용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활동비 지급기간에 한하여서만 무상으로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동의 범위 초과	1500만원	
114	071212-서울 2007가합 22441 판결	인터넷 사이트	연예인 들 (공인)	연예인의 인기도를 주가로 표현하는 사이버증권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경우	무동의	사용금지, 각 100만원	
115	071227-남부 2007가합9017 판결	방송	사인	몰래카메라로 비만치료와 관련된 피촬영자의 초상을 촬영하였으나 모자이크 처리되었으므로 초상권 침해를 부정한 사례	무동의	기각	몰래카메라
116	080104-서울 2006가단 448780 판결	신문	유명인 (공인)	간첩단 사건과 관련하여 남편 초상을 게재한 것이 처 고유의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로 본 사례	무동의	원고1 100만원 · 원고2 200만원 · 원고3 300만원	
117	080326-서울 2007가합 48542 판결	광고	연예인 (공인)	광고계약기간을 넘겨 원고의 초상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이 없었던 경우	동의 범위 초과	기각	
118	080326-서울 2007가단 40534 판결	방송	사인	결혼정보업체 대표와의 교체 중 상습폭행문제가 동의 없이 방영되었거나 동의 후 방영되었어도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과 용도로 재차 방영되었음을 이유로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본 사례	무동의 · 예상과 달리 사용	600만원	피해자의 특정
119	080403-남부 2007가합 14910 판결	방송	사인	명의를 도용당하여 렌터카가 빌려졌는데 그 차량이 범행도구로 사용된 경우로서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을 뉴스에서 공개수배한 경우	무동의	원고1 2000만원 · 원고2,3,4(가족) 각 500만원	공개수배
120	080515-남부 2007가합 23884판결	방송	사인	피촬영자를 강도살인 혐의로 공개수배하는 방송을 하였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무동의	원고1 500만원 · 원고2,3 (부모) 각 200만원 · 원고4,5,6 (형제) 각 100만원	2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12.24 선고 2008나55247 판결은 1심을 그대로 원용 공개수배
121	080527-서울 고등 2007나 11059 판결	방송	사인	[97] 참조	동의 범위 초과	각 1300만원	[97]의 2심
122	080724-남부 2007가합 21642	방송		[134] 참조	무동의	1100만원	피해자 특정
123	081031-남부 2008가합 2419 판결	방송	목사 (공인)	교회 내부의 교육용 동영상 등 동의 없이 방영하였으나 교회의 대표자는 공적인물이므로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수인하여야 한다고 본 경우	무동의	기각	
124	081205-남부 2008가합 12799 판결	신문 (주간지)	○○ 중앙회 대표 (공인)	○○중앙회의 경영행태와 관련된 기사 중 원고의 초상을 사용하였으나 원고는 ○○중앙회의 대표자로서 공적인물이므로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수인하여야 한다고 본 경우	무동의	기각	

순번	사건번호	침해의 태양	침해의 대상	침해의내용	동의 여부	판결	비고
125	090114-서울 2008나4093 판결	신문	유명인 (공인)	[116] 참조	무동의	원고1 200만원 · 원고2,3 각 400만원	[116]의 2심
126	090421-서부 2007가단 83352 판결	케이블 방송	사인	당초 예상과는 다른 형태로 원고가 한번에 35 명까지 사건 경력이 있는 바람둥이라는 표현의 자막과 함께 피촬영자의 영상을 사용한 경우	예상과 달리 사용	300만원	
127	090512-서울 고등 2009나 2155 판결	방송	사인	전화여론조사 업무를 하고 있는 피촬영자의 초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직장상사의 동의만 으로 촬영, 방영하였으나 이익형량의 결과 촬 영, 방영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무동의	기각	1심은 서울중앙지법 2008.12.3선고 2008가단140565 판결 3심은 대법원 2009.8.20선고 2009다41038 판결로 상고기각
128	090519-남부 2009가합311 판결	방송	사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증면을 담은 피촬영자들의 영상을 폐기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3개 프로그램에서 다시 방송한 경우	예상과 달리 사용	원고1 100만원 · 원고2,3 각 200만원	
129	090922-부산 2009가단 23128 판결	방송	사인	설연휴 교통상황을 보도하던 중 피촬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요금징수장면을 촬영, 보도 하였으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무동의	기각	목적적 동의여부
130	091004-서울 2009가합 41071 판결	인터넷 신문	사인	OO교회 신도들과 이에 반대하는 시위대 간의 충돌에 관한 기사에서 원고의 사진을 사용하 였지만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무동의	기각	집회시 초상권 침 해가 되는 경우를 세가지로 분류함
131	091124-동부 2008가단 62527 판결	방송	변호사 (사인)	취재나 인터뷰 거부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실 명과 초상을 화면에 나타난 상태에서 수입료 가 과다하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경우로서 위 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부동의	500만원	
132	100127-서울 2009가합 81994 판결	신문	사인	6월 항쟁 계승·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 관련 기사 중 시청앞 광장에서 경찰과 대치한 군중들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게재되었는데 피촬영자가 의경을 향하여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촬영배포된 경우로서 위법 성이 조각된다고 본 경우	무동의	기각	집회의 경우
133	100326-부산 2009나48455 판결	방송	사인	[129] 참조	무동의	100만원	[129]의 2심
134	100701-서울 고등 2009나 102614 판결	방송	사인	“파마값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미용가 격표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한 다음 고 액의 미용료를 요구한 사례로 원고의 미용실 을 소개한 경우	무동의	100만원	
135	100908-성남 2010가단 13045	방송	사인	[137] 참조	무동의	원고1 200만원 · 원고2,3 각 50만원	

순번	사건번호	침해의 태양	침해의 대상	침해의내용	동의 여부	판결	비고
136	100909-서울 2010나23226 판결	방송	사인	의사가 보관중이었던 피촬영자의 코 사진을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방송사로 하여금 촬영하여 방영되도록 한 경우	무동의	항소기각	1심 서울중앙지법 2010.5.14선고 2009가소322524 판결(600만원)
137	101104-성남 2010가합1018 판결	방송	어린이 들 (사인)	이단교회로 자목되는 교회의 어린이 합창단원 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이를 방송사와 의 프로그램에서 공개한 경우	무동의	각 700만원	
138	101125-서울 2009가단 300209 판결	신문	사인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광화문 코 리아나호텔 주변을 지나면서 집회 찬·반을 다투는 여자들을 말리다가 사진에 찍힌 경우	무동의	기각	집회의 자유
139	101229-서울 2010가합 79614 판결	인터넷 신문	연예인 (공인)	김○○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기사를 계속 게재하면서 인터넷 독립신문의 초기화면 우측 하단에 <독립신문 VS 김○○>라는 배너를 두 고 그 아래 김○○의 사진을 배치한 화면을 둔 경우	부동의	피고1 1500만원 · 피고2 800만원	
140	110401- 의정부 2010 가단15011 판결	방송	사인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게 해주는 브로커의 존재를 알리는데 신변이 알려지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음에도 음성을 변조 하지 아니하고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초상권침해를 인정한 사례	동의 범위 초과	300만원	
141	111012-서울 2011가합 44370 판결	인터넷 신문	사인	재벌가의 재혼사실과 관련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을 기사화하면서 동의 없이 원고들 및 가 족의 사진을 촬영, 공표한 경우	무동의	원고1 5000만원 · 원고2 1000만원	
142	111020- 의정부 2011 나15011 판결	방송	사인	[140] 참조	동의 범위 초과	700만원	[140]의 2심